

고려 중기 국가의례(國家儀禮) 개편의 배경과 지향*

김보광**

- I. 머리말
- II. 고려 전기 국가의례의 성립
- III. 고려 중기 국가의례 개편의 배경과 내용
- IV. 국가의례 개편의 지향
- V. 맺음말

I. 머리말

국가의례란, 주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실이나 국가를 위해 설행된 제사, 축제, 기복, 기양 등의 다양한 의례를 가리키는 총칭으로, 유교적인 오례(五禮)의 범주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등의 의례나 축제 등까지 포괄한다.¹ 여기에 더해 정치적 권위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의례와 상징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성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데에 의례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재창조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의례가 기여한다. 이는 권력으로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의례는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의 지위를 재확인시켜 다시 다른 이에게 통치자의 권위가 미치도록 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다.²

* 이 글은 2025년 1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미술사학회 공동주최 <고려 상형청자특별 전 연계 학술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또한 가천대학교 교내인문사회연구자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202206980001).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부교수

1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p. 319. 개념상으로는 이와 같지만, 이 글에서는 유교에 입각한 국가의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고려의 의례에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고려는 정치제도, 의례 등 지배체제 전반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중국 한(漢)에서 당(唐), 송(宋)에 이르기까지 의례(儀禮)는 권력의 정당성을 현상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각 왕조에 따라 변화를 해왔다. 고려도 이른바 당송의 제도를 수용하였다고는 하지만, 10~12세기에 걸쳐 대내외적 상황은 계속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12세기를 고려중기라고 잠정적으로 구분하고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이 시기만의 의례상이 특징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우선 성종에서 문종대까지 이른바 의례의 성립 과정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12세기에 의례가 개편되는 배경과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세기 의례가 개편되는 방향 또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II. 고려 전기 국가의례의 성립

고대 한국의 여러 정치체들은 나름의 제사 등의 의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신라의 경우에 대사, 중사, 소사 같은 국가제사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의 의례를 도입하여 오례(五禮)에 따른 국가의례 체계까지 마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성과들이 나온 바 있다.⁴

고려에서도 건국 직후부터 국가의례가 거행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 시기의 의례 절차나 의장(儀仗)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고려초의 정치제도가 신라나 태봉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그 영향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례의 내용도 신라나 태봉의 것과 비슷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태봉의 상황을 참고삼아 보자.

2 하워드 J. 웨슬러, 임대희 역, 『비단길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3 한편으로 이 글에서 전기와 중기라는 표현으로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전기는 고려 초기부터 문종대까지를 포함하며, 중기는 그 이후 대략 선종에서 의종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이는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임을 밝혀둔다.

4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부만을 소개한다. 최광식, 『古代韓國의 國家와 제사』 (한길사, 1994);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한국사연구』 149 (2010); 채미하, 「한국 고대의 宮中儀禮 즉위례와 조하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12 (2013); 채미하, 「신라의 嘉禮 수용과 運用」, 『한국 고대사탐구』 18 (2014); 최희준, 『新羅 外賓 迎接儀禮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한영화, 「신라 祀典 체계의 특징과 운영」, 『역사와 경계』 110 (2019).

가) 의출하면 항상 흰 말을 탔는데 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하였다.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여자아이들로 하여금 깃발, 일산, 향(香), 꽃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고, 비구 2백여 명을 시켜 범패를 부르며 뒤를 따르게 하였다.⁵

가)를 보면, 궁예가 행차할 때 아이, 승려 등을 동원하고 불교음악인 범패를 연주하였다. 곧 국왕 행차라는 의종(儀從)에 불교적 색채가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 초에도 마찬가지로 불교적 요소가 강한 의례가 거행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가 성종이다. 성종은 흔히 유교적이고 중국적인 제도를 수용해 고려의 각종 제도를 갖춘 국왕으로 유명하며, 이후 의례를 포함한 고려의 각종 지배체제의 성립에 중요한 분기가 된다. 여기에는 최승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승로는 982년(성종 1) 6월에 성종이 경관(京官) 5품 이상의 관원 모두에게 당시의 정치나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득실을 올리도록 하자, 이에 답하여 「오조정적평(五朝政績評)」과 「시무(時務) 28조」를 작성하여 올렸다.⁶ 이를 통해서 최승로의 입장을 살필 수 있는데, 그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다만 불교 신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경, 절의 신축, 행사 등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를 지향하였으면서 광종과 같이 국왕 독단의 전제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결국 그는 유교정치 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를 지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최승로의 건의안에 대해서 성종은 크게 공감하고 당시 실시된 새로운 국가체제 정비에 반영하였다.⁷

성종대인 987년(성종 6)에 이몽유가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리는 문서인 주(奏)와 장(狀), 관청끼리 주고받는 공문(公文)의 양식을 정하였다.⁸ 또 신라에서도 五廟의 형식으로 늦어도 687년에 이 제도를 수용하였지만,⁹ 정작 고려에서 태묘가 국초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성종대

5 『三國史記』 권50, 列傳 10 弓裔; 이하 이 글에서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를 인용한 기사에 대한 해석은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것을 토대로 하고, 부분적으로 필자가 수정한 것임을 밝혀준다.

6 『高麗史節要』 2 성종 1년(982) 6월.

7 이기백 편, 『최승로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8 『高麗史』 권3, 世家 3 성종 6년(987) 8월 을묘(25).

9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8 神文王 7년(687) 夏4月; 신라의 오묘제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邊太燮, 「묘제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歷史教育』 8 (1964);李文基, 「新羅 五廟制의 成立과 그 背景」, 『韓國古代史와 考古學—鶴山金廷鶴博士頌壽紀念論叢—』 (학연문화사, 2000); 최광식, 「고대 국가제사의 역사적 의의」,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및 채미하, 「新羅 五廟制 ‘始定’과 神文王權」, 『白山學報』 70 (2004) 등 참고.

에 가서야 태묘 등의 의례 시설을 갖추었다.

이 시기에 정비된 유교적인 의례나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983년(성종 2) 원구단(圓丘壇)을 설치하여 풍년을 빌었으며 거기에 태조의 신위를 모시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⁰ 같은 해에 적전(籍田)을 직접 갈고 신농씨(神農氏)를 제사하였으며 후직(后稷)의 신위(神位)를 함께 모시기도 하였다.¹¹ 그리고 989년(성종 8)에는 태묘(太廟)를 지으면서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기도 하였다.¹²

983년(성종 2)에 박사 임노성(任老成)이 송나라에서 『태묘당도(太廟堂圖)』, 『태묘당병기(太廟堂并記)』, 『사직당도(社稷堂圖)』, 『사직당기(社稷堂記)』,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 『제기도(祭器圖)』, 『칠십이현찬기(七十二賢贊記)』 등을 들여왔다.¹³ 이중 『태묘당도』와 『태묘당병기』, 『사직당도』와 『사직당기』는 그 제목으로 미루어보건대 태묘와 사직에 대한 제도를 설명한 그림과 기록일 것이다. 그리고 『제기도』는 태묘나 사직 등에서의 의례 설행을 위한 제기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988년(성종 7)에 태묘를 오묘(五廟)로 할 것을 정하였고,¹⁴ 989년 4월에 오묘의 공사를 시작하여 992년 11월에 오묘 건물을 낙성하고 소목제(昭穆制)에 따른 신주의 위치와 태묘에서의 제사인 체협(禘祫)의 절차를 정하였다.¹⁵ 또 991년(성종 10)에는 사직을 세웠다.¹⁶ 어찌되었든 이 시기에 고려가 송의 제도를 통해 유교적 제도를 학습하려고 했음도 짐작할 수 있어 고려의 의례에 송대(宋代)의 의례(儀禮)가 반영되거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성종은 태조 이래 대왕 의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중국 고제 및 당·송 의례, 태조 유품과 광종의 칭제건원 개혁, 신라와 관련된 토풍도 참작했다. 그 결과 다방면에 걸친 의례 및 제도 정비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고려를 놓고 송은 유교 예제 면에서 송과 비슷한 수준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할 정도였다.¹⁸

10 『高麗史』 권59, 志 13 禮 1 吉禮 大祀 圓丘, 成宗二年正月辛未.

11 『高麗史』 권3, 世家 3 成宗 2년(983) 정월 을해(18).

12 『高麗史』 권3, 世家 3 成宗 8년(989) 4월 계유(23).

13 『高麗史』 권3, 世家 3 成宗 2년(983) 5월 갑자(9).

14 『高麗史』 권3, 世家 3 成宗 7년(988) 12월.

15 『高麗史』 권61, 志 15 禮 3 吉禮 大祀 諸陵, 成宗 8년(989) 및 成宗 11년(992).

16 『高麗史』 권59, 志 13 禮 1 吉禮 大祀 社稷, 成宗 10년(991) 윤2월.

17 김대식, 「고려 行頭·班首의 검토」, 『역사와 담론』 53 (2009); 김보광,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113 (2014).

18 한정수, 「고려 성종대 의제(儀制) 정비와 그 정치 문화적 의미」, 『역사와실학』 81 (2023).

현종대 이후에도 국가의례는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크게 경령전의 설치를 비롯한 태조 관련 의례, 거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직 등 의례 시설의 복구를 들 수 있다.

경령전(景靈殿)은 태조와 현왕 4대친 등 5개 진영을 모시고 봉사(奉祀)한 공간이다. 그러다가 남북공동발굴조사 1차, 3차를 통해 만월대 서북쪽, 금원 가까이 위치한 3건물지의 3-1호 건물에서 5개 예단이 확인되면서 이곳이 경령전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하지만 경령전을 처음 건축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다. 경령전은 기록상 덕종 즉위년인 1031년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¹⁹ 건설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시설에 덕종이 즉위 사실을 고하고 있어 현종대에 경령전이 처음 세웠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²⁰

또한 1014년(현종 5)에 강감찬은 사직단을 수리하는 가운데 의주(儀注)를 정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때의 의주는 전해지지는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²¹ 그리고 1052년(문종 6)에는 황성안 서쪽에 사직단을 새로이 신축하였다.²² 아마도 성종대에 처음 설치되어 현종대에 개수될 때에는 황성안 서쪽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듬해에는 사직단의 배위나 그 의례에 사용할 제주(題主)와 축문(祝文)을 정하였다.²³

흥미로운 사실은 1059년(문종 13) 4월에 이장공이 『삼례도(三禮圖)』 54절과 『손경자서(孫卿子書)』를 새로이 새겨 국왕에게 바친 점이다.²⁴ 당시 이장공은 지남원부사로 남원의 수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²⁵

삼례도는 송 초에 후한(後漢)에서 당대(唐代)까지 편찬된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의 삼례(三禮)에 대한 자료를 모아 여러 가지 제사, 제단, 기물 등을 기록하고 그림을 덧붙여서 정리한 예서이다.²⁶ 그리고 『손경자서』는 『순자』를 말한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데, 예(禮)를 통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한 중

19 『高麗史』 권5, 世家 5 德宗 즉위년(1031) 6월 경자(24).

20 경령전의 건립이 현종의 재위 기간 중 언제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현화사, 흥경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현종 후반부로 비정하는 견해가 좀더 많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창현, 「고려시대 개경 궁성안 건물의 배치와 의미」, 『한국사연구』 117 (2002);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114 (2009);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2009);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2012).

21 『高麗史』 권59, 志 13 禮 1 吉禮大祀 社稷. 顯宗 5년(1014) 7월.

22 『高麗史』 권59, 志 13 禮 1 吉禮大祀 社稷. 文宗 6년(1052) 2월.

23 『高麗史』 권59, 志 13 禮 1 吉禮大祀 社稷. 文宗 6년(1052) 8월 을유(13).

24 『高麗史』 권8, 世家 8 文宗 13년(1059) 4월 경진(16).

25 이장공은 이번의 진상 때문인지 다음해인 1060년에 시어사로 임명받았다. 나중인 1086년(문종 36)에 그는 문하시중까지 올랐고, 순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따라서 문종대의 유력 관료로 활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6 김우성, 「고려 전기의 예서 도입과 태묘 제례」,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p. 317.

국 전국시대의 유학자이다. 그의 저작이 전한 말에 『손경신서』 32편으로 정리되었다가 당의 유향이 『순자』 20권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당대의 것이 오늘날까지 전한다.²⁷

이정공의 출판 행위는 남원 지역에서 이들 예서에 대한 특별히 수요가 있었다기보다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는 국가적인 의도에 따라 조성하여 바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당시 고려에서 의례나 유교 등을 활용해 국가의 지배체제를 정비하려는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인 1058년 9월에 충주에서 각종 의서를 만들어 올렸으며,²⁸ 1059년 2월에는 안서도호부사(安西都護府使)가 『주후방(肘後方)』을 비롯해 『의옥집(疑獄集)』, 『천옥집(川玉集)』 등을, 경산부에서는 『수서(隋書)』를 조성하여 올리니, 비각(秘閣)에 보관해 두고 이들에게 의대(衣帶)를 내려준 바 있다.²⁹ 남원을 비롯해 충주, 안서도호부, 경산 등에서 비슷한 시기에 각종 서적을 조성하여 바친 것은, 해당 지역 수령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획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담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국가적 사업이라 짐작되는 것이다. 의례만이 아니라 옥사, 의술, 역사 등 다방면에 대한 서적의 조성과 인출이 이루어진 것은, 문종대에 각종 제도 정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고려는 성종대부터 당송의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정치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태묘, 사직 등과 같은 의례의 측면도 구비해 나갔다.³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입된 의례에 고려의 지배층이 잘 적응한 것 같지는 않다.

나-1) 현종(顯宗) 14년(1023) 5월 사헌대(司憲臺)에서 아뢰기를, “백관(百官)들이 조회(朝會)에서 무릎 꿇고 잡담을 하거나 혹은 한번만 절을 하는 등 행동하는 것이 주제넘고 건방져서 반항(班行)에서 특히 조정의 예의를 잃고 있으니, 청하옵건대 엄격하게 금지하십시오.”라고 하니, 이 의견을 따랐다.³¹

27 李春植 主編, 『中國學資料解題』 (신서원, 2003). 荀子の 이름은況이고, 荀卿이라고도 불리다가 漢 宣帝의 휘를 피해 孫卿으로 고쳐 부른 것이, 이러한 서명이 나온 유래이다.

28 『高麗史』 권8, 世家 8 文宗 12년(1058) 9월 기사 초하루(1).

29 『高麗史』 권8, 世家 8 文宗 13년(1059) 2월 갑술(9).

30 문종을 이은 선종대인 1093년(선종 10)에도 송의 의례를 반영하여 의례 절차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찾아볼 수 있다(『高麗史』 권67, 志 21 禮 9 嘉禮 王太子節日受宮官賀筵會儀).

31 『高麗史』 권85, 志 39 刑法 2 禁令 顯宗 14년(1025) 5월.

나-2) 11월 을축. 왕이 동지(東池)에 행차하였는데, 검교위위소경(檢校衛尉少卿) 최성절(崔成節)이 아무 까닭 없이 장전(帳殿) 앞까지 들어오니 왕이 놀라서 하옥(下獄)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사(法司)에서 아뢰기를, “임금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목을 베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비록 율(律)에 정해진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으로 형벌을 가하면 가혹한 처리이고 또 <최성절은> 문필(文筆)이 쓸 만하니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문하성(門下省)이 논박하여 아뢰었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³²

나-1)은 현종대에 조회에서 의례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잡담을 하기도 하는 등 조회에 임하는 관료들의 행실을 사헌대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2)는 문종대에 국왕의 거처와 관련한 규정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동지는 궁궐의 동편 동궁 옆에 있는 못이다. 궁궐의 바로 옆이기는 하지만 궁궐 내는 아니기에 일종의 천막으로 국왕이 거처로 삼은 장전(帳殿)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문종은 1055년(문종 9)에 이곳으로 나아가 머물렀는데, 검교위위소경(檢校衛尉少卿) 최성절(崔成節)이 이유 없이 장전 앞까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처벌을 받을 뻔하였다.

필자가 현종대의 조회에서의 행동거지 문제나 최성절의 사건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때 고려의 관료들이 의례, 예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회는 군신(君臣)이 모이는 의례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의례이다. 이때 관료들이 절의 횃수를 틀린단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등의 행동으로 예의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관료들이 의례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구나 최성절은 불과 얼마 전까지 좌부승선(左副承宣)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의 관직에 있었다.³³ 승선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여 국왕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중추원(추밀원)의 관직이며, 전중시어사는 백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어사대의 관직이다. 따라서 최성절은 국왕과 관련한 의례나 절차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수행하였을 것이므로, 관료가 국왕을 대하는 의례 등에 경험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왕의 처소에 허락 없이 함부로 접근하였다. 현종대 조회에서 방탕한 관료들이나 문종대 최성절이 보인 모습은, 의례에 대한 규범화가 아직 자리잡지 못해 익숙하지 않은 당시 관료들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³⁴

32 『高麗史』 권7, 世家 7 文宗 9년(1055) 11월 을축(11).

33 『高麗史』 권7, 世家 7 文宗 6년(1052) 4월 기묘(4).

Ⅲ. 고려 중기 국가의례 개편의 배경과 내용

문종대를 지나면서 고려 사회는 인주이씨로 대표되는 문벌이 크게 번성하는 등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면서 도리어 왕권이 제약되는 환경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외부적으로는 여진의 흥기와 거란(요)의 쇠퇴라고 하는 국제 환경이 급변도 고려 사회의 위기를 더하고 있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고려 내부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³⁵

문벌의 번성과 이에 따른 왕권의 상대적인 약화는, 왕권 강화를 비롯한 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종의 즉위와 숙부인 숙종 사이의 갈등, 인종대 이자점의 난과 십팔자도참설 등이 이 시기 왕권의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 예종대에는 도교를 비롯해 비기도참설이 성행을 하였다. 각종의 재이(災異)는 일종의 운명론으로, 왕권의 천수천명(天授天命)을 강조하여 왕권의 절대성을 내세우게 된다. 반면 유교의 입장에서는 재이와 같은 것은 군주의 실정(失政)에 따른 결과라는 군주수덕론(君主修德論)을 내세운다. 이는 국왕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용인하여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종대의 한안인과 같은 계열의 세력은 예제를 고정된 불변의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었다. 반면, 인종대의 김부식과 같은 이들은 예제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론 인해 이자점이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도참설과 같은 종교적 신비주의와 상징 조작 등을 이용하여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 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어찌 보면 예종대부터 신비주의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입장과 유교적 도덕주의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입장의 길항 관계가 인종대에 묘청의 난과 같은 정치적 갈등으로 불거졌다 하겠다. 예제 등에 국왕의 지위를 높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적은 같다고 하더라도 시기나 세력에 따라 그 방식, 지향에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외적으로는 1100년을 전후하여 여진이 흥기하면서 12세기 전반의 동아시아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고려는 숙종, 예종대에 유례없이 '윤관의 여진 정벌'로 대표되는

34 최성철의 행동은 의례에 대한 이해 문제가 아니라 기강 해이라는 개인 차원의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사례를 의례의 규범화에 따라 관료층의 공유, 공문화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35 11세기 후반, 12세기 전반의 사회 변화와 그에 짝한 정치적 대응은 그 전후 시기와는 다른 사회적 성격을 가져왔다는 입장에서 '중기'로 시기를 구분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채웅석, 「고려사회의 변화와 고려중기론」, 『역사와 현실』 32 (1999) 등 참고.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고려의 여진 정책은 1126년에 여진(金)에 대한 사대 결정으로 이어졌고, 고려는 사대의 대상을 거란(요)에서 여진(금)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11세기 후반부터 고려는 송과 공식적인 교류를 재개하였는데, 동아시아의 정세 급변에 따라 송과의 책봉-조공 관계 형성에는 부정적이었다. 반면 이 시기에 송은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여진과 연계하여 거란(요)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취하면서, 고려에 책봉 제의나 여진에 대한 중재 등을 요청하여 고려를 곤혹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12세기 전반의 국제 정세 변동은 송이나 여진(금을 세운 이후에도)에게 고려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상황이었고, 고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송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제도나 예제 등에서 정치적 개혁의 모범과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종은 직접에 송에 권적 등을 보내 그곳에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송으로 유학을 떠났던 권적이 이자량 일행과 1117년에 귀국하자, 그의 활동을 허락해준 송의 황제에게 예종은 감사의 표문을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송 황제의 치적을 칭송하면서 이를 흠모한다고 하여 송의 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후반부는 권적 등 몇 명을 보내 배우게 하였고 이들이 송에서 교육받고 송의 과거에 급제하여 송의 관직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³⁶ 예종이 송으로부터 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 하겠다.

다) (권적은) 무릇 재학하던 7년 동안 여러 차례 고예과(考藝科)의 으뜸을 차지하였고, (송의) 황제가 직접 와서 책시할 적에 갑과(甲科) 첫 번째로 뽑혔다. 본조(本朝)로 돌아올 적에, 예종이 이에 대해 듣고 훌륭하게 여겨 유사(有司)에게 악부(樂部)와 채산(綵山)을 갖추어 예성강(禮成江)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예종은) 대관전(大觀殿)에 가서 만나고, 이어 군신(群臣)들에게 3일 동안 잔치를 열어 경하하였다. 곧바로 국자박사(國子博士)에 임명하여, 국학의 예의규식(禮儀規式)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편찬하게 하였다. 몇 년이 안 되어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³⁷

다)는 고려후기에 최자가 권적에 대해 남긴 평가 중의 일부이다. 송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권적을 예종이 성대하게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국 후 권적은 국학의 예의규식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편찬하였다. 곧 교육 제도에 대한 기준, 원칙, 관련 의례 등을 정비

³⁶ 『高麗史』 권14, 世家 14 예종 13년(1118) 08월 무오(8).

³⁷ 崔滋, 『補閑集』 권상, 「權學士適, 奉國表遊學於宋」.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던 것인데, 당연하게도 그가 송에서 유학한 경험을 반영하라는 예종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송의 상황을 모범 내지 기준으로 삼아 체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그 중의 하나가 예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정비라고 하겠다. 의례의 개편과 관련 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개보통례』 등 전례서의 수입 등을 통한 송대 예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당말오대(唐末五代)의 혼란을 거쳐 송(宋)을 세운 태조는 중국 이상세계인 삼대(三代)를 재현하기 위해 고례(古禮)의 복원을 추구하여, 동기(銅器)와 같은 제기(祭器)와 의례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962년에 섭송의(聶崇義)가 20권의 『삼례도(三禮圖)』를 편찬한 바 있다.³⁸ 또 송 태조 당시의 예제를 정리하여 『개보통례(開寶通禮)』도 편찬하였다.³⁹ 주(周)를 희구하면서 송이 주를 계승하였다는 인식에서 예제 정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는 휘종(徽宗) 때인 1114년(政和 3)에 ‘신의(新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⁴⁰ 일단락되었다.⁴¹

고려는 이미 성종대에 『삼례도』를 비롯해 태묘나 사직에 대한 예서를 수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려는 『개보통례』의 존재도 알고 있던 듯 선종대부터는 이 책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085년(선종 2)에 선종은 송 철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편에 『태평어람』, 『개보통례』, 『문원영화』 등의 구입 의사를 밝혀서 1090년(선종 9)에 『문원영화』를 받은 바 있다.⁴² 그렇지만 『개보통례』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098년(숙종 3)에 『개보정례(開寶正禮)』라는 서적을 송으로부터 받게 되는데,⁴³ 이것은 『개보통례』의 별칭이다. 이때 『개보통례』를 확보한 경로는 알 수 없는데, 송으로부터의 사여와 같은 공식적인 경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위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숙종이 송의 신법과 개혁을 모방하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보통례』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한다.⁴⁴

태묘에서 올리는 체제, 협제의 친향의에 신설된 제기 이(彝)와 준(尊)을 놓고 분석한 시험적

38 『續資治通鑑長編』 권2, 太祖 乾隆 2년(961) 5월 乙丑.

39 『宋史』 권3, 本紀 3 太祖 3 開寶 6년(973) 春正月 丙午.

40 『宋史』 권21, 本紀 21 徽宗 3 政和 3년(1114) 하4월 庚戌; 『宋史』 권98, 志 51 禮 1 吉禮 1 서문 政和 3년.

41 陳芳妹, 「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 『美術史研究集刊』 10期 (國立臺灣大, 2001), pp. 40-46.

42 『宋史』 권487, 列傳 246 高麗 神宗 元豐 8년(1085); 『高麗史』 권10, 世家 10 宣宗 7년(1090) 12월 임인(12).

43 『高麗史』 권11, 世家 11 肅宗 3년(1095) 12월 병신(22).

44 이민기, 「고려시대 法駕鹵簿의 구성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48 (2017); 김우성, 앞의 글, pp. 319-320.

인 연구에서는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내용은 『대당개원례』와 대체로 유사하며, 송대 기록인 『태상인혁례』와는 부분적으로 비슷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고려가 성종대부터 당제에 입각한 의례를 시행해 왔으며, 의례가 가진 보수성 때문에 송제를 전폭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⁴⁵ 숙종대 이래 송 예제의 영향에 따라 예제에 대한 개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고려가 송의 의례를 수용한 직접적인 모습은 대성악(大晟樂)의 채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1) 또 대성악(大晟樂)을 하사한다는 조서도 보냈다.⁴⁶

라-2) 무진 건덕전(乾德殿)에서 대성악(大晟樂) 연주를 보았다.⁴⁷

라-3) 계유 <왕이> 태묘(太廟)에서 친히 관제(裸祭)를 지내면서, 대성악(大晟樂)과 서경(西京)에서 얻은 상서로운 옥으로 만든 제기(祭器)를 올렸으며, 아울러 새로 지은 구실등가(九室登歌)를 연주하였다.⁴⁸

라-4) 을해 적전(藉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처음으로 대성악(大晟樂)을 사용했다.⁴⁹

라-1)은 1115년에 송으로 사행을 갔던 사신 일행이 1116년 6월에 귀국하였다는 기사의 일부이다. 이때 송으로부터 각종 선물 등을 내려준다는 내용 등의 조서가 전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성악의 하사이다. 2)는 1116년에 고려가 송으로부터 대성악을 받고 나서 처음 연주를 보았다는 것이다. 3)은 태묘에서 대성악을 처음 연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옥으로 만든 새로운 제기도 선을 보였다. 4)는 인종대에 적전에서 제사에도 대성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대성악이라는 송에서 새롭게 정비되어 등장한 예악이 고려에 도입되어 태묘, 적전의 순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가 대성악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음악만이 아니라 제기도 함께 들어왔을

45 김우성, 앞의 글, pp. 330-336.

46 『高麗史』 권14, 世家 14 예종 11년(1116) 6월 을축(3).

47 『高麗史』 권14, 世家 14 예종 11년(1116) 10월 무진(8).

48 『高麗史』 권14, 世家 14 예종 11년(1116) 10월 계유(13).

49 『高麗史』 권16, 世家 16 인종 12년(1134) 01월 을해(25).

가능성이 있다.

라-5) <정화(政和)> 7년(1117)에 변(邊)과 두(豆) 각 12개, 보(篋)와 궤(篋) 각 4개, 등(登) 1개, 형(鉶) 2개, 정(鼎) 2개, 뇌세(壘洗) 1개, 준(尊) 2개를 <고려에> 내려주었다. <그릇에는> 다음과 같은 명(銘)이 있었다. “아, 그대는 덕이 있고 효성스럽고 공손하여 대대로 동번(東蕃)이라 불렸으니, 앞으로도 뛰어난 것이니 나 홀로 기쁘다. 그대의 지위를 크게 하여 그대 조상을 편안케 하고자 한다. 자자손손으로 영원히 보존하라!”⁵⁰

송측은 1117년(예종 12)에 고려에 제기인 변(邊), 두(豆), 보(篋) 궤(篋), 등(登), 형(鉶), 정(鼎), 뇌세(壘洗), 준(尊) 등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1117년이면 대성악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하기 위해 송에 갔던 이자량 등이 돌아온 해이다.⁵¹ 만약 이 기사가 맞다면 이자량이 귀국 시에 받아왔을 것이다. 새롭게 제편된 송의 의례에 맞는 대성악과 제기를 송이 1116년과 1117년에 순차적으로 고려에 보낸 셈이다.

다만 제기에 대한 고려의 반응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기는 하다. 이 시기 고려가 대성악의 전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표문을 보내기도 하고, 대성악을 비롯해 송의 문물을 접한 것에 대한 찬사와 고마움이 언급된 표문도 『동인지문사록(東人之文四六)』이나 『동문선(東文選)』 등에서 여럿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제기를 받았다는 언급이 포함된 표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기 사여에 대해 사례하는 별도의 표문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당장 제기 사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어찌 되었든 고려가 송의 제기를 수용하여 대성악과 마찬가지로 해당 제기 자체나 그를 모본으로 삼아 만든 것을 태묘나 적전 등에서의 의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1164년(의종 18)에 태묘에 도둑이 들어 제기를 훔쳐간 사건이 있었다.⁵² 태묘는 조상에 대한 제례 공간이며 그 의례에서 송의 대성악이 제악(祭樂)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태묘의 제기도 송 제기와 연관이 깊다고 하겠다. 1275년에는 경령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 변(邊), 두(豆)가 없는 것을 알고 정사색의 것을 빌려 제사를 지낸 바 있다.⁵³ 경령전에서의 친전의의를 보

50 『宋史』 권119, 志 72 禮 22 徽宗 政和 7년(1117).

51 『高麗史』 권14, 世家 14 예종 12년(1117) 5월 정사(30).

52 『高麗史』 권18, 世家 18 의종 18년(1164) 8월 신사(28).

53 『高麗史』 권28, 世家 28 충렬왕 원년(1275) 5월 갑술(4).

면, 향을 불사르고 술잔을 올리고 음복하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변, 두라고 두 종류의 제기만이 언급되었지만, 주자, 잔, 향 등의 다른 제기도 경령전에 기본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1275년이라는 시점은 강도(江都)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때여서 이동 혹은 보관 중에 제기의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찌 되었든 경령전에서 사용된 제기도 태묘 등에서 사용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고려의 의례 개편에서 주목할 두 번째 부분은 예제의 정비를 넘어 집대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정고금예문』의 편찬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고려는 성종 때에 예제를 갖출 때부터 송으로부터 전례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선종, 숙종 때에 『개보통례』를 확보하려 노력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고려가 송의 의례를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예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움직임은 예의상정소의 설치와 『상정고금예문』의 편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다.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는 1113년(예종 8)에 설치되었는데, 이듬해에 외교문서로 작성되는 표장과 서간의 칭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⁵⁴ 또 원구(圓丘)를 비롯해 태묘(太廟), 사직(社稷), 적전(籍田) 및 여러 원릉(園陵), 국선(國仙) 등에 대한 역대 조정에서 내려온 예식과 연혁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⁵⁵ 그러므로 예의상정소는 예종대에 문서식, 의례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개정 방향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해 예종대에 예제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예제 정비 성과는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상정고금예문』의 편찬 시점에 대해서는 인종대와 의종대라고 하는 두 가지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이규보는 인종이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에게 명하여 고금의 서로 다른 예문(禮文)을 모아 참작하고 절충하여 50권으로 된 『상정예문(詳定禮文)』을 만들었다고 하였다.⁵⁶ 반면 『고려사(高麗史)』의 찬자들은 「예지(禮志)」 등을 편찬하면서 『상정고금예문』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종 때에 평장사 최윤의가 50권으로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편찬하였다는 언급을 남기고 있다.⁵⁷ 평장사 최윤의 등이 50권으로 된 전례서(典禮書)를 편찬하였다

54 『高麗史』 권84, 志 38 刑法 1 公牒相通式 外官 睿宗 9年 6월.

55 『高麗史』 권14, 世家 14 예종 11년(1116) 4월 경진(17).

5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1, 「新序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

57 『高麗史』 권59, 志 13 禮 1 序文.

는 동일한 내용으로, 서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인종과 의종으로 그 시기만이 다르지만, 인종대에서 의종대에 걸쳐 편찬되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⁸ 그 편찬 시기는 의종대인 1161년으로 확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1188년(명종 18)에 악공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사신(史臣)이 예제에 대한 언급에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곧 “신사년에 우리 조정의 유신(儒臣)과 미친 악공들이 멋대로 고쳐”라고 한 구절이 나온다. 이것이 1188년(명종 18) 2월의 일이므로, 해당 언급은 『명종실록』의 것을 『고려사』에 전제하였을 것이다.⁶⁰ 그럼 ‘신사년’은 1188년 이전이고, 송의 음악은 1116년(예종 11)에 전해졌으므로, 그사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사년’은 1161년(의종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즈음 최윤의가 평장사 판상서이예부사 감수국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조정의 유신과 미친 악사들이 마음대로 개작하였다’라는 표현은 『상정고금례』의 편찬을 뜻하는 것이 된다.⁶¹

이 『상정고금예문』은 예종대 예의상정소의 설치를 통해 예제 정비를 비롯해 인종대를 거쳐 의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전례서의 편찬은 고려 중기 의례를 정비하려는 조정의 노력이 완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고종대에는 금속활자로 28본을 찍어 여러 관사에 배포하였으니,⁶² 이는 그 수록된 내용이 관사에서 준용해야 하는 예제였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상정고금예문』에 수록된 예제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고려사』 「예지」나 「여복지(輿服志)」의 의례나 복색 등 곳곳에서 의종대에 ‘상정(詳定)’하였다는 내용이 다수 나오고 있다. 곧 태묘 의례, 봉은사에서 태조에게 친전하는 의례, 연등회와 팔관회의 의례, 서경이나 남경으로의 순행할 때의 의장과 의위, 노부, 복식 등에서 의종대에 상정되었다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이 책이 유교적 의례만이 아니라 불교 행사, 도교 의례, 음악, 의장, 노부, 복식 등 의례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례서(典禮書) 내지 의례집(儀禮集)임

58 이범직은 인종대로, 김혜영, 김철웅, 김창현은 의종대로 판단하였다. 다만, 김창현은 인종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의종대에 완성한 것으로 두 기록을 수용하였다. 필자도 김창현의 견해와 같이 인종대부터 의례를 집대성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이해한다.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일조각, 1991); 김당택, 「詳定古今禮文編纂時期와 그意圖」, 『湖南文化研究』 21 (1992); 金海榮, 「詳定古今禮와 高麗朝의 祀典」, 『國史館論叢』 55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철웅,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史學志』 33 (2003);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2011); 최봉준, 「고려 의종대 다원적 사상지형과 『編年通錄』·『詳定古今禮』 편찬」, 『韓國史學史學報』 44 (2021).

59 『高麗史』 권70, 志 24 樂 1 雅樂. 명종 18년(1188) 2월 임신(6).

60 고려말 이제현의 사론이나 조선시대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려사』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현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줄을 바꿔 구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타의 사론과 다른 형태로 그냥 ‘史臣’이라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현 등의 것이 아닌 명종대 당시의 것으로 생각된다.

61 김철웅, 앞의 글, pp. 4-5.

62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1, 「新序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

을 말해준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파악되는 바가 오례(五禮) 중 길례(吉禮)에 해당하는 국가제사에 관한 것이 중심이다.⁶³

한편으로 『상정고금예문』으로 정리된 예제에는 대성악으로 대표되는 송대 의례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의례에 사용된 음악과 관련하여 대성악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며, 역시 의례에서 못 관료들이 취하게 되는 문무(文舞)나 무무(武舞)의 경우에도 송제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사료에서 생략한 부분에 승지(承旨) 서온(徐溫)이 개인적으로 송에 가서 무의(舞儀)를 익히고 돌아와 전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IV. 국가의례 개편의 지향

마지막으로 12세기에 들어와 진행된 고려의 예제 개편이 담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숙종대 이후 정책의 기초를 공리주의적 개혁에 맞추어 왔지만 9성을 반환한 후 여진정벌이 실패하였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그 기초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후 정책은 교육·문화부문의 혁신과 민생구제 쪽으로 중심을 옮겼으며, 이를 통하여 예종은 전쟁 후유증과 리더십 약화를 수습하고 문예군주·구세군주로서 위상을 세우려 하였다. 그에 따라 대송외교와 문물수입을 중시하였으며, 재초(齋醮) 의례가 중심이 되는 도교를 수용하여 복원궁을 건립하였다. 도교의 초를 지내는 것은 제세안민(濟世安民)의 천명(天命)을 받은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송관계의 강화와 도교를 비롯한 문물수용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공적 질서의 회복과 군신연방(君臣延訪)을 강조하였다.⁶⁴

인종의 측근세력과 서경세력이 결합하여 풍수도참론 기반의 혁신책을 내세워 정치적 의제를 주도하면서 권력의 독점적 추구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왕조의 운명을 풍수도참·종교적 비전 법률로써 연기하고 칭제건원(稱帝乾元), 금국정벌(金國征伐) 등 공업(功業), 공리(功利)를 추구하는 혁신책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운명론적으로 개경에 수도를 둔 왕조의 국운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꾸어 부흥시키기 위하여 대화궁을 건설하고 왕이 이어해야 한다

⁶³ 김철웅, 앞의 글, pp. 9-16.

⁶⁴ 채웅석, 「고려 예종대 道家思想·道敎 흥기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研究』 142 (2008).

고 주장하고, 재이(災異)와 서상(瑞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묘청, 백수한, 정치상 등을 성인으로 받들면서 국정 전반에 간여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서경세력의 독점적 권력 추구의도가 명백해지고 대화공 창건 이후에 재이가 오히려 빈발하자, 인성론적 접근방식으로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부상하여 대립하였다. 김부식, 임완 등은 재이를 하늘의 경고로 해석하여 왕의 수덕(修德)과 인정(仁政)을 강조하는 유교정치론을 강화하고 그런 정치의 우수성을 역사에서 실증적 증거를 찾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다.⁶⁵

의종은 즉위과정에서 불안정했던 위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모반사건들을 거치면서 초기부터 측근세력을 육성하려 하였다. 의종대는 유교 관료정치를 추구하는 관료들과 국왕 측근세력간의 갈등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중기 이후 측근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걸으려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이룬 듯이 보였다. 그런데 실상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세력들은 물론 민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으며, 정치운영이 경색되어 탄력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유교적 관료정치를 추구하는 관료들은 구체적인 사회경제 개혁보다 유교 정치 이념의 강화, 도덕주의와 예제(體制)의 확립을 통한 현실문제의 해결을 생각했다. 반면 국왕 측근세력 가운데 환관과 술인들은 중기 무렵부터 종교적 관념적 차원에서 해결을 추진하였으며, 측근 문신관료들은 후반기 왕을 신성화하여 왕과 그를 보좌하고 만드는 존재로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려 하였다.⁶⁶

결국 숙종, 예종, 인종대 왕권 신성화의 흐름과 의종대 그 흐름은 왕권의 강화와 신성화라는 맥락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인종대에 열린 점찰법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인종은 자신의 질병을 낮게 하려고 속리산에서 점찰법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김부식이 법회의 소(疏)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부처님에게 의지한다는 말로 시작하고는, 인종이 갑자기 병을 크게 앓았는데, 의원이나 무당의 방술로도 낫지 않고 신령에 대한 기도로도 효험이 없다는 인종의 건강상태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숙종의 즉위 과정과 이자겸의 난 과정에서 죽은 이들의 혼백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혼백들이 불법에 의지하여 번뇌를 벗어나 부처님을 만나기를 기원하고자 점찰법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이

65 채웅석, 「고려 인종대 '惟新'정국과 정치갈등」, 『韓國史研究』 161 (2013).

66 채웅석, 「의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9 (1993).

어지고 있다.

이때 이 글의 작성 시기나 점찰회의 개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자겸의 난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1126년 이후로 상한 시기를 알 수 있다. 또한 찬자가 김부식인데 내용 중 묘청이나 서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묘청의 난이 발생하기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묘청의 난이 일어난 1135년이 이 법회 개최시기의 하한이 될 것이다. 1126년에서 1135년 사이에 지은 글이라 하겠다.

점찰회는 신라말 진표의 점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참회와 미륵신앙에 기반한 것이다. 진표는 모두 189개의 간자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업과 과보(果報)를 점치고 그에 따라 참회와 계를 통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장려하여,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점찰이라는 행위를 포함한 법회라는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사후의 극락왕생보다는 현세에서의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륵신앙과 결합될 수 있었다.⁶⁷ 그리고 속리산은 진표의 법을 계승한 영심이 점찰회를 연 곳으로 그 본규(本規)를 계승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속리산에서 열린 이 점찰회는 인종이 조부와 자신의 정치적인 변란과 관련한 과거의 과오를 거론하면서 정명(正命)이 아닌데 사망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 결과로 치병을 회구하는 목적이다. 그렇기에 이 의식은 위령제의 성격을 지닌다.⁶⁸ 바꿔 말하자면 점찰회는 국가 지배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을 통한 종교 행사라 하겠다. 나아가 이것은 비기도참설(秘記圖讖說)이 왕권의 신성성(神聖性, divinity)을 강조하는 경향과도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맥락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상정고금예문』에 대한 비판이다. 1188년(명종 18)에 나온 사신(史臣)의 평을 자세히 보자.

마-1) 명종(明宗) 18년(1188) 2월 임신(壬申), <중략> 사신(史臣)이 이르기를, “음악이 없어지고 어지러워진 것이 심합니다. 태상부(太常府)에서 근래에 임금의 윤허를 받아 선왕(先王)의 시대에 시행하던 제도를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유사(有司)가 시일을 미루며 시행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아 식자(識者)들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음악을 말하자면 ①송(宋) 조정이 신악(新樂)을 예종(睿

67 박미선,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68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韓國史論』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pp. 141-147.

宗)에게 하사한 것이지, 본래 송 태조(太祖)가 제작한 음악은 아니며, 음악을 시행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송은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물며 ②신사년(辛巳年, 1161, 의종 15)에 우리 조정의 유신(儒臣)과 미친 악공들이 몇대로 고쳐 그 순서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아래를 어지럽혀서, 간(干)과 척(戚), 약(筭)과 적(翟)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태상의 편제(編制)에 이르기를, '송 조정에서 단지 의관과 악기만을 부쳐왔기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연습하여 익힐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③승지(承旨) 서온(徐溫)이 송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무의(舞儀)를 익히고는 전수하여 가르쳤으나, 그 나아가고 물러나며 성기고 빠른 절도(節度)는 근거가 없어서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하였다.⁶⁹

이 기록은 악공의 소속이 문란해지자 명종이 이들을 본업에 충실하도록 조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악공과 관련하여 의례에서 사용되는 음악과 무용에 대한 사신(史臣)의 의견도 인용되어 있다. 명종 18년 시점에서 사신이 언급한 비판은 ①, ②, ③의 밑줄 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은 대성악에 대한 내용이다. 송이 예종에게 '신악'을 하사하였다고 하므로, 이것이 대성악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대성악이 송 태조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고 하고 있다. 곧 대성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②는 앞서도 인용한 부분으로, 신사년, 곧 1161년(의종 15)의 예제 개편에 대한 것이다. 『상정고금예문』의 편찬을 의미하는데, “유신(儒臣)과 미친 악공들이 몇대로 고쳐” 그 순서나 길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③은 승지(承旨) 서온(徐溫)이 송에 들어가 의례에 사용되는 무의(舞儀)를 익혀 왔으나, 그것이 개인 차원의 성과여서 그 의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①, ②, ③ 모두 『상정고금예문』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연결된다. 이는 『상정고금예문』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고려 예제에 대한 부정(否定)이라고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기록은 『상정고금예문』의 편찬이 의종대인 1161년 무렵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3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②와 같이 신랄한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여 년 사이에 의례, 그 너머 왕권에 대한 상당한 시각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곧 12세기 전반기에는 왕권을 강조하고, 그를 과시하는 방향에서 예제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69 『高麗史』 권70, 志 24 樂 1 雅樂. 명종 18년(1188) 2월 임신(06).

1170년의 무신정변으로 인해 그 지향을 지속하기에는 정치 환경이 급변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인종에서 의종대에 걸친 예제 개편을 놓고 마음대로 하였다고 평가한 것은, 그 방향성에 대한 반대, 비판을 담은 것이다. 특히 그 주체로 ‘유신(儒臣)’이라고 꼭 짚어 놓은 것은 명종대 무신(武臣) 주도의 정국 지형에서 나타난 인식이라 하겠다.

이런 비판 인식의 의도,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를 내린 사신이 누구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관제상 사관(史官)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관직으로 수국사(修國史), 감수국사(監修國史)가 있다. 정확히 1188년 시점에서의 사관이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1188년을 전후하여 이 두 관직을 지낸 이를 찾아보면 의미심장한 인물이 보인다. 곧 최세보(崔世輔)이다.

마-2) 신축일, 상장군(上將軍) 최세보(崔世輔)를 동수국사(同修國史)로, 장군(將軍) 최연(崔連)과 김부(金富)를 모두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임명하였다.⁷⁰

마-3) 어떤 사람이 중방(重房)에 참소하기를, “수국사(修國史) 문극겸(文克謙)이 의종이 시해된 사건에 대해 ‘왕을 시해(弑害)한 것은 천하의 큰 죄악이다.’라고 사실대로 썼으니, 무관(武官)에게 이 직을 겸하게 하여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문극겸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은밀히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무신들의 뜻을 어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이 옛 제도가 아니어서 싫어하였지만 결국 최세보를 동수국사(同修國事)로 임명하였다. 최세보는 마음대로 <동수국사>의 사(事)자를 사(史)로 고쳤다. 이로 말미암아 『의종실록(毅宗實錄)』에는 빠지거나 생략된 사실이 많아 부실하게 되었다.⁷¹

마-2)는 1186년(명종 16)에 상장군인 최세보를 동수국사로, 장군인 최연과 김부를 예부시랑으로 임명하였다는 기사이다. 동수국사는 사관직의 하나이며, 예부시랑도 외교, 학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예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이기에 사관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문반 관직이라 하겠다. 여기에 상장군, 장군이라는 무관이 임명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한데, 무신정권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결과임에 분명하다. 마-3)은 2)와 같은 인사 조치의 기사이지

70 『高麗史』 권20, 世家 20 명종 16년(1186) 12월 신축(28).

71 『高麗史』 권100, 列傳 13, 崔世輔.

만, 이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곧 의종 시해라고 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불충(不忠)한 사건이 실록에 남을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관에 무관을 임명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종실록』은 매우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세보가 동수국사로 임명되고, 장군 최연, 김부가 예부시랑 같은 문반 관직에 임명된 것 자체가 무신들이 문반 관직을 장악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곧 사관의 활동에 무신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였다. 더구나 최세보는 한미한 출신으로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는데,⁷² 애초에 그가 동수국사(同修國史)가 아니라 동수국사(同修國事)로 관직명이 고쳐 임명된 이유이다.⁷³ 그는 무신정변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신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니, 경대승 정권 시기에는 경대승, 두경승, 이광정, 조원정 등과 함께 상장군으로 중방에 참여하고도 있었다.⁷⁴ 비록 문맹이지만 최세보가 사관에 임명되었기에, 사관의 역할이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최세보의 인식은 당시 집정 무신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시기의 사론과 같은 사관들의 평가에 무신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⁷⁵

그렇다면 『상정고금예문』 편찬으로 대표되는 12세기 예제 개편을 1188년에 신랄하게 평가한 주체인 사관은 최세보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무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신정권의 인식과 평가가 담긴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㉒에서 보이는 비판의 핵심은 개편된 예제가 순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엉망이라는 것이다.⁷⁶ 이는 의종을 폐위시키고, 나아가 의종을 살해하기까지에 이른 무신정권으로는 의종 내지 왕권을 가능성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거꾸로 12세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의례 개편이 왕권의 강조

72 『高麗史』 권100, 列傳 13, 崔世輔.

73 무신정권이 세워지자 무신들은 기존의 양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신들이 문신의 관직을 임명받도록 요구하여, 채주직을 시작으로 지방의 수령에까지 임명되었다. 또한 내시, 다방 같은 근시직에도 진출하였으며, 사관 같은 문관관도 임명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변태섭, 「고려조의 문반과 무반」 및 「고려후기의 무반에 대하여」,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김당택, 「무신란과 초기의 무신정권」,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3), pp. 46-47 참고.

74 김당택, 「李義政政權의 性格」,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pp. 23-28.

75 정구복, 「고려조 사관의 실록편찬」, 『한국중세사학사(I)』 (집문당, 1999), p. 131; 참고로 1184년(명종 14)의 인사에서 문극겸이 亞相이 되어야 했지만 무신인 최세보를 두려워 하여 그를 자기보다 먼저 아상이 되도록 양보한 일도 있었다(『高麗史節要』 권13, 명종 14년 12월). 이는 당시 무신들이 지위가 높더라도 무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김호동, 「李義政政權의 제조명」, 『慶大史論』 7 (1994) 및 신수정, 「武臣政權과 文克謙」, 『실학사상연구』 10 · 11 (1999), p. 140).

76 필자가 언급한 '비판'은 1188년 즈음의 무신정권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최씨정권 시기에 들어가 이규보의 『상정고금예문』에 대한 언급을 보면(『東國李相國集』 권11, 序2 新序詳定禮文跋尾[代晉陽公行]), 이 예에서 자체를 존중하고 있기도 하다.

를 지향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고려의 국가의례가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고려는 전기 이래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의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종대부터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의례의 정비를 본격화하였다. 기존에는 의례 제도 정비를 당송 의례의 수용으로 크게 이해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당시 국내 상황과 사회 변화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11세기 말, 12세기 전반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곧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가의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예종대에 대성악이나 제기 등 송의 의례 개편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고려는 국가의례를 집대성하여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였다.

숙종과 예종대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공적 지배질서의 회복을 지향하였고, 인종도 측근이나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의 독점 구조를 만들려고 하였다. 의종도 측근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노력하였다. 명종대에 사신들이 의종대 『상정고금예문』과 같은 의례 개편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이 시기 의례 개편의 지향이 왕권 강화에 있었음을 거꾸로 보여준다.

* 주제어(keywords)_ 국가의례(national ritual), 의례 개편(ritual reform), 대성악(*taesŏngak*, ritual music), 상정고금예문(*Sangjŏng kogŏm yemun*, The Prescribed Ritual Text of the Past and Present), 최세보(Ch'oe Sepo), 왕권 강화(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신성성(divinity)

■ 투고일 2025년 5월 10일 | 심사개시일 2025년 5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5년 6월 6일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三國史記』
『宋史』
『續資治通鑑長編』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崔滋, 『補閑集』

2. 한국어 문헌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범상종」, 『韓國史論』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김당택, 「고려 文宗~仁宗朝 仁州李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2001.
_____, 「무신란과 초기의 무신정권」, 『(신편)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_____, 「詳定古今禮文 編纂時期와 그 意圖」, 『湖南文化研究』 21, 1992.
김대식, 「고려 行頭·班首의 검토」, 『역사와 담론』 53, 2009.
金秉仁, 「韓安仁勢力과 李資謙勢力의 政治的 對立」, 『高麗 睿宗代 政治勢力 研究』, 경인문화사, 2003.
김보광,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113, 2014.
김우성, 「고려 전기의 예서 도입과 태묘 제례」,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金潤坤, 「고려 귀족사회의 제모순」,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4.
_____, 「李資謙의 勢力基盤에 對하여」, 『大丘史學』 10, 1976.
_____,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출판부, 2001.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_____,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2011.
_____, 「고려시대 개경 궁성 안 건물의 배치와 의미」, 『한국사연구』 117, 2002.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114, 2009.
_____,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史學志』 33, 2003.
金海榮, 「詳定古今禮와 高麗朝의 祀典」, 『國史館論叢』 55,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호동, 「李義旼政權의 재조명」, 『慶大史論』 7, 1994.
南仁國, 「고려 인종대 정치지배세력의 구성과 동향」, 『歷史教育論集』 15, 1990.
_____, 『고려중기 정치세력 연구』, 신서원, 1999.
盧明鎬,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韓國史論』 1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7.

- 박미선,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 변태섭, 「고려조의 문반과 무반」,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 _____, 「고려후기의 무반에 대하여」,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 _____, 「묘제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歷史教育』 8, 1964.
- 신수정, 「武臣政權과 文克謙」, 『실학사상연구』 10 · 11, 1999.
- Edward J. Shultz, 「한안인과의 등장과 그 역할」, 『歷史學報』 99 · 100합, 1983.
- 이민기, 「고려시대 法駕鹵簿의 구성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48, 2017.
-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 李春植 主編, 『中國學資料解題』, 신서원, 2003.
-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2009.
- 채용석, 「고려사회의 변화와 고려중기론」, 『역사와 현실』 32, 1999.
- _____, 「고려 인종대 '惟新' 정국과 정치갈등」, 『韓國史研究』 161, 2013.
- _____, 「의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9, 1993.
- 최봉준, 「고려 의종대 다원적 사상지형과 『編年通錄』 · 『詳定古今禮』 편찬」, 『韓國史學史學報』 44, 2021.
- 하워드 J. 웨슬러, 임대희 역,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 한정수, 「고려 성종대 의제(儀制) 정비와 그 정치 문화적 의미」, 『역사와실학』 81, 2023.
- _____,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2012.
- 황항주, 「이자겸의 집권 배경과 인종초 이자겸 권력의 공식화」, 『中央史論』 62, 2024.

3. 동양어 문헌

陳芳妹, 「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 『美術史研究集刊』 10期, 國立臺灣大, 2001.

4.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Cho'e, Cha. *Pohanjip*

Koryŏsa[History of Koryŏ]

Koryŏsa chŏryo[Essentials of Koryŏ History]

Samguk sagi[History of Three Kingdoms]

Song shi[History of Song]

Tongmunsŏn[Selected Works of Chosun]

Xu zizhi tongjian changbian[Extended Continuation to Zizhi Tongjian]

Yi Kyubo. *Tongguk I Sangguk jip*[Collected Works of Minister Yi of Koryŏ]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ae, Ungsŏk (Chai, Oong-Seok). "Ŭijongdae chŏngguk ũi ch'ui wa chŏngch'i unyŏng." *Yŏksa wa hyŏnsil* 9 (1993): 99-130.

_____. "Koryŏ sahoe ũi pyŏnhwa wa Koryŏ chunggiron[The Changes in Koryŏ Society and the Debate of Mid-Koryŏ Dynasty]." *Yŏksa wa hyŏnsil* 32 (1999): 123-159.

_____. "Koryŏ Injongdae yusin chŏngguk kwa chŏngch'i kaltŭng[The study about Reforms and Political Conflicts under the Reign of King Injong(1122-1146)]." *Han'guksa yŏn'gu* 161 (2013): 1-36.

Chang, Tongik. "Koryŏ sidae ũi Kyŏngnyŏngjŏn[Kyungnyeongjoen in Goryeo Dynasty]." *Yŏksa kyoyuk nonjip* 43 (2009): 487-512.

Ch'oe, Pongchun (Choi, Bong-Jun). "Koryŏ Ŭijongdae tawŏn chŏk sasang chihyŏng kwa *P'yŏnnyŏn t'ongnok*, *Sangjŏng kogŭmnye* p'yŏnch'an[Pluralistic ideological structure and compilation of 'Pyeongnyeontongrok' and 'Sangjeonggogeumrye' during the period of King Uijong, Goryeo Dynasty]." *Han'guk sahak sahakpo* 44 (2021): 205-240.

Han, Chŏngsu. "Koryŏ sidae kukka ũiryŏ ũi sŏrhaeng kwa t'onghap ũishik[The Hosting of State Rituals in the Goryeo Dynasty and Integration Consciousness]." *Han'guk chungsesa yŏn'gu* 55 (2018): 319-360.

_____. "Koryŏ Sŏngjongdae ũije chŏngbi wa kŭ chŏngch'i munhwa chŏk ũimi[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ing Seongjong's Ritual and System and its Political and Cultural Implications in Goryeo Dynasty]." *Yŏksa wa sirhak* 81 (2023): 55-90.

Hong, Yŏngŭi (Hong, Young Eui). "Koryŏ kunggwŏl nae Kyŏngnyŏngjŏn ũi kujo wa unyong[The Structures and Processes of the Gyeongryeongjeon in Palace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Han'guk'ak nonch'ong* 37 (2012): 67-91.

- Hwang, Hyang-ju. "I Chakyŏm ūi chipkwŏn paegyŏng kwa Injong ch'o I Chakyŏm kwŏllyŏk ūi kongsik'wa[Foundation of Yi Ja-gyeom's Political Power and Officializing Process of His Power in the Early Period of King Injong's Reign]." *Chungang saron* 62 (2024): 5-54.
- I, Ch'unsik, ed. *Chunggukhak charyo haeje*. Sŏul: Sinsŏwŏn, 2003.
- I, Minki. "Koryŏ sidae Pŏpka Robu ūi kusŏng kwa unyong[A Study on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Beobga Nobu(法駕鹵簿) in Goryeo Dynasty]." *Han'guk chungsesa yŏn'gu* 48 (2017): 157-189.
- I, Pŏmchik. *Han'guk chungse ye sasang yŏn'gu*. Sŏul: Ilchogak, 1991.
- Kim, Ch'anhyŏn (Kim, Chang-Hyun). *Koryŏ kaegyŏng ūi kujo wa kŭ inyŏm*. Sŏul: Sinsŏwŏn, 2002.
- _____. "Koryŏ sidae Kaegyŏng kungsŏng an kŏnmul ūi paech'i wa ūimi. [The Arrangement and the Meanings of Buildings in Gungseong of Gaeyŏ]." *Han'guksa yŏn'gu* 117 (2002): 91-124.
- _____. "Koryŏsa Yeji ūi kujo wa sŏnggyŏk[Structure and Character of Ye-ji of Goryeosa]." *Han'guksa hakpo* 44 (2011): 37-83.
- Kim, Ch'ŏlung (Kim, Cheol-woong). "Sangjŏng kogŭmnye ūi p'yŏnch'an sigi wa naeyong." *Tongyanghak* 33 (2003): 233-252.
- _____. "Koryŏ Kyŏngnyŏnggiŏn ūi sŏlch'i wa unyŏng." *Chŏngsin munhwa yŏn'gu* 114 (2009): 101-127.
- Kim, Haeyŏng. "Sangjŏng kogŭmnye wa koryŏjo ūi sajŏn." *Kuksagwan nonch'ong* 55 (1994): 72-98.
- Kim, Hotong. "Iŭiminjŏnggwŏn ūi chaejomnyŏng." *Kyŏngtaesaron* 7 (1994): 35-76.
- Kim, Namyun. "Koryŏ chunggi pulgyo wa pŏpsangjŏng." *Han'guksaron* 28 (1992): 109-149.
- Kim, Pokwang (Kim, Bo-kwang). "Koryŏ Sŏngjŏng, Hyŏnjŏngdae T'aejo paehyang kongsin ūi sŏnjŏng kwajŏng kwa ūimi[Founder's Meritorious Retainers in Royal Ancestral Shrine of Koryo: Who and Why]." *Sahak yŏn'gu* 113 (2014): 43-81.
- Kim, Pyŏngin. "Han anin seryŏk kwa I Chagyŏm seryŏk ūi chŏngch'i chŏk taerip." In *Koryŏ yejongdae chŏngch'i seryŏk yŏn'gu*, 99-135. P'aju: Kyŏngin munhwasa, 2003.
- Kim, Taesik (Kim, Dae Sik). "Koryŏ haengdu pansu ūi kŏmt'o[Study of Ceremonial Post Hangdu(行頭) and Bansu(班首) in the period of Goryeo]." *Yŏksa wa tamnon* 53 (2009): 307-335.
- Kim, Tangt'aek. "Sangjŏng kogŭm yemun ūi p'yŏnch'an shigi wa kŭ ūido." *Honam munhwa yŏn'gu* 21 (1992): 1-12.
- _____. "Musillan kwa ch'ogi ūi musin chŏnggwŏn." In *Sinp'yŏn Han'guksa* 18, 17-47. Sŏul: Kuksa p'yŏnch'an wiwŏnhoe, 1993.
- _____. "Koryŏ Munjŏng-Injongju Inju issi ūi chŏngch'i chŏk yŏk'al Han'guk chungse sahoe ūi chemunje." In *Han'guk chungse sahoe ūi chemunje*, 179-198. Sŏul: Han'guk chungse sahakhoe, 2001.
- Kim, Usŏng. "Koryŏ chŏn'gi ūi yesŏ toip kwa t'aemyo cherye[Teamyō Rites and Introduction of National Rituals Book in Early Goryeo Dynasty]." *Han'guk chungsesa yŏn'gu* 51 (2017): 315-352.
- Kim, Yunkon. "Koryŏ kwijok sahoe ūi chemosun." In *Han'guksa* 7, 27-86. Sŏul: Kuksa p'yŏnch'an wiwŏnhoe, 1974.

- _____. "I Chakyōm ūi seryōk kiban e taehayō." *Taegu sahak* 10 (1976): 33-52.
- _____. *Han'guk chungse ūi yōksa sang*. Kyōngsan: Yōngnamdae ch'ulp'anbu, 2001.
- Nam, Inkuk. "Koryō Injongdae chōngch'i chibae seryōk ūi kusōng kwa tonghyang." *Yōksa kyoyuk nonjip* 15 (1990): 71-95.
- _____. *Koryō chunggi chōngch'i seryōk yōn'gu*. Sōul: Sinsōwōn, 1999.
- No, Myōngho. "Yi Chagyōm ilp'a wa Han Anin ilp'a ūi choktang seryōk—Koryō chunggi ch'insok tūl ūi chōngch'i seryōk hwa yangt'ae—." *Han'guk saron* 17 (1987): 167-225.
- Pak, Misōn (Park, Mi-sun). "Chinp'yo chōmch'al pōp'oe ūi sōngnip kwa sōnggyōk[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Jinpyo's Jeomchal Buddhist Mass]." *Han'guk kodaesa yōn'gu* 49 (2008): 223-256.
- Pyōn, T'aesōp. "Myoje ūi pyōnch'ōn ūl t'onghayō pon Silla sahoe ūi palchōn kwajōng." *Yōksa kyoyuk* 8 (1964): 56-76.
- _____. "Koryō hugi muban e taehayō." In *Koryō chōngch'i chedosa yōn'gu*, 399-448. Sōul: Ilchogak, 1971.
- _____. "Koryōjo ūi munban kwa muban." In *Koryō chōngch'i chedosa yōn'gu*, 276-341. Sōul: Ilchogak, 1971.
- Shultz, Edward J. "Hananinp'a ūi tūngjang kwa kŭ yōk'al." *Yōksa hakpo* 99 and 100 (1983): 147-183.
- Sin, Suchōng. "Musin chōnggwōn kwa mun'gŭkkyōm." *Sirhak sasang yōn'gu* 10 and 11 (1999): 115-150.
- Wechsler, Howard J. *Pidan katko chuok kat'ŭn chōngch'i*. Translated by Taehŭi Im. Sōul: Kojŭwin, 2005.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 Chen, Fangmei. "Song gu qiwu xue de xingqi yu Song fanggu tongqi[The Rise of Sung Antiquarianism and the Imitation of Archaic Bronze]." *Meishushi yanjiu jikan di shi qi* 10 (2001): 37-160.

4. Database

Han'guksa teit'ōbeisŭ (Database of Korean History), <https://db.history.go.kr/goryeo/>

국문초록

이 글은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고려의 국가의례가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고려는 전기 이래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의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종대부터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의례의 정비를 본격화하였다. 기존에는 의례 제도 정비를 당송 의례의 수용으로 크게 이해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당시 국내 상황과 사회 변화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11세기 말, 12세기 전반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곧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가의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예종대에 대성악이나 제기 등 송의 의례 개편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고려는 국가의례를 집대성하여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였다.

숙종과 예종대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공적 지배질서의 회복을 지향하였고, 인종도 측근이나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의 독점 구조를 만들려고 하였다. 의종도 측근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노력하였다. 명종대에 사신(史臣)들이 의종대의 의례 개편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이 시기 의례 개편의 지향이 왕권 강화에 있었음을 거꾸로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Abstract

The Background and Orienta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State Rituals in Koryŏ in the 12th Century

Kim, Bo-kwang*

This study examines the reorganization of state rituals in Koryŏ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round the 12th century, focus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of these changes. Since the early Koryŏ period, the dynasty had placed considerable importance on ritual as part of its efforts to consolidate the state system. Beginning in the reign of King Sŏngjong, Confucian norms were actively adopted to restructure official rites.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often interpreted this process as a passive adoption of Tang and Song ritual systems, this study reevaluates it as a proactive and deliberate response to internal conditions and social transformations of the time.

In particular, from the late 11th century to the early 12th century, a series of reforms aimed at strengthening royal authority was initiated, with state rituals revised to emphasize the sacredness of the monarch.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Koryŏ actively embraced Song ritual reforms such as *taesŏngak* (court music for the ancestral temple) and sacrificial vessels, culminating in the compilation of the *Sangjŏng kogŭm yemun*, a comprehensive code of rituals.

Under Kings Sukjong and Yejong, the centralization of royal power and the restoration of public order were key political agendas, while King Injong sought to establish a monopolized power structure through his inner circle and the influential group based in Sŏgyŏng. Similarly, King Ŭijong attempted to assert political dominance through his close retainers. The harsh criticism by court historians during the reign of King Myŏngjong regarding the ritual reforms under King Ŭijong further underscores that these ritual revisions were closely tied to efforts to enhance kingship.

* Associate Professor, Gachon Liberal Arts College, Gachon University